

부산지방법원 2017. 12. 8 선고 2017가단133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11. 22.

판결 선고 2017. 12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피고가 점유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

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함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김성률

별지